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52

발의연월일: 2021. 9. 30.

발 의 자: 박주민·김남국·김영배

김용민 · 노웅래 · 박성준

오기형 • 이수진 • 이용호

이해식 · 최기상 의원

(1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(법률 제16924호, 2020. 2. 4. 개정)이 2022. 1. 1.부터 시행될 예정임(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「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단서).

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부칙 제1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312조제1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 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② 제312조제1항의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	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<u>&lt;신 설&gt;</u>	제1조의2(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
	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
	례 및 경과조치) ① 제312조제1
	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
	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
	한다.
	② 제312조제1항의 시행 전에
	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
	전의 규정에 따른다.